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4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임이자·김영식·한무경

金炳旭・김성원・박성민

허은아 · 김석기 · 서일준

이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시설, 정수시설,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들 시설에서는 수처리제, 중화제, 소독제, 시험분석용 등으로 가성소다, 액체염소, 염산, 황산 등 유해화 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고,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 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(2012. 1. 29.), 유해화학물질 고시 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사업장에 대하여도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수도법 제7조의 규정은 매우 불합리함.

이에 취수시설, 정수시설, 공공하수처리시설,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시험·분석·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 처리제, 중화제,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「수도법」 일부개정법 률 시행일,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 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 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 등). 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"행위"를 "행위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취수시설, 정수시설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,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시험·분석·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, 중화제,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 관한 특례)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수도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0976호, 2011.7.28.)의 시행일(2012.1.29.),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 물질 또는 그 물질의 대체물질을 사용할 수

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현 행	개 정 안
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	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	③
·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	
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	
없다.	.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7	1
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	
염물질·특정수질유해물질,	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	
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,	
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	
에 따른 농약, 「폐기물관리	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	
기물,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	
호・제2호에 따른 오수・분	
뇨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	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	
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	
사용하거나 버리는 <u>행위</u> <u><단</u>	<u>행위.</u> 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취수시설, 정수시설, 「물환
	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
	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, 「하
	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

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국가·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험 ·분석·연구기관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수처리제, 중화 제, 소독제, 시약 등으로 사 용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.